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학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교무처장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 1) 대학 자율권 보장에 따른 학칙 적용 기준의 명확성 확보
- 2) 학사개선에 따른 세부내용 기준 변경

2. 주요 개정 내용

1) 학칙

제6조(교육조직), 제7조(행정조직), 제36조(교과목의 분류와 편성), 제37조(교과 이수단위), 제49조(전과 및 편입생 학점)

2) 학칙 시행세칙

제3장 제4조(강좌의 폐강), 제5조(시험),
제4장 제5조(자기주도설계 전공), 제6조(마이크로전공)
제10장 제2조(계절학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1. 5(화)**까지 교무처 학사지원팀 메일(prof_data@syu.ac.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학과, 성명 그 밖의 참고사항 등

회신기한: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회신방법: 이메일 prof_data@syu.ac.kr(양식에 따라)

관련문의: 02-3399-3153

삼육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개정	비고
제6조(교육조직) ① 본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 보건복지대학 , 과학기술대학 , 약학대학, 문화예술대학 ,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스미스학부대학을 둔다.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제6조(교육조직) ① 본교에 신학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창의융합대학 , 미래융합대학, 스미스학부대학을 둔다.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제6조 내용 수정
제7조 (행정조직) ① 본교에 교목처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와 재무처, 감사실을 둔다. ② 생략 ③ 생략	제7조 (행정조직) ① 본교에 교목처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와 재무처, 입학처 , 감사실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내용 수정
제36조 (교과목의 분류와 편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교양과목은 인성교양 영역, 인문학 영역 , 사회과학 영역, 자연과학 영역, 문화예술 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편성한다.	제36조 (교과목의 분류와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양과목은 인성교양 영역, 인문예술 영역 , 사회과학 영역, 자연과학 영역, 디지털리터러시 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편성한다.	제36조 내용 수정
제37조 (교과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및 실습, 실기, 현장실습(인턴십) 등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매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37조 (교과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7조 내용 수정
제49조 (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전과 및 편입학 한 사람에 한하여서는 전적대학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 전과 및 편입학과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취득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 (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① 전과한 학생은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취득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② 편입학 학생은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고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9조 내용 수정 항구분

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개정	비고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등 제4조(강좌의 폐강)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 수가 교양과목인 경우 15명 이하, 전공과목인 경우 7명 이하의 강좌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등 제4조(강좌의 폐강)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 수가 교양과목인 경우 15명 이하, 전공과목인 경우 7명 이하의 강좌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교과목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4조 내용 삽입
제5조 (시험) ① ~⑤ 생략 ⑥ 재학생 중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이후의 입대예정자는 입대 2주일 전까지는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 일주일 이후인자는 기말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제5조 (시험) ① ~⑤ 현행과 같음 ⑥ 재학생 중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 의 90%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이후의 입대예정자는 입대 2주일 전까지는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 일주일 이후인자는 기말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제5조 (시험) ⑥ 수정
제4장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제1조 (부전공) 생략 제2조 (복수전공) 생략 제3조 (연계전공) 생략 제4조 (융합(공유)전공) 생략	제4장 다전공 제1조 (부전공) 현행과 동일 제2조 (복수전공) 현행과 동일 제3조 (연계전공) 현행과 동일 제4조 (융합(공유)전공) 현행과 동일 제5조 (자기주도설계 전공) 신설 ① 본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자기주도설계 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설계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제1전공) 이수 학점과 관계없이 전공과목을 7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조건은 자기주도설계 전공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기주도설계 전공 책임(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도설계 전공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마이크로전공) 신설 ① 본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마이크로 전공을 할 수 있다. ② 마이크로전공과 관련된 자세한 이수 조건은 마이크로전공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 제6조 신설

현행	개정	비고
제10장 학생 출결석, 계절학기 제1조 생략 제2조(계절학기) ① ~ ⑥ 생략	제10장 학생 출결석, 계절학기 제1조 생략 제2조(계절학기) ① ~ ⑥ 현행과 동일 ⑦ (유고결석) 계절학기 중 유고결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친족사망, 예비군 훈련 등 관련하여서는 유고결석으로 인정한다.	제2조 ⑦ 신설
제12장 교직과정 제1조 생략 제2조 (교직과정 설치 학과) 간호학사학위원성과정 보건교사(2급) 제4조 (교직과정 선발) ① ~ ② 생략 ③ 3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원성과정 은 선발할 수 있다.	제12장 교직과정 제1조 생략 제2조 (교직과정 설치 학과) 삭제 제4조 (교직과정 선발)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3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 부분 수정 삭제 제4조 ③ 부분 삭제
제14장 국내 및 국제 교류 교육 제8조 ① 매 학기 13~20학점을 수강신청하고 이수해야 한다.	제14장 국내 및 국제 교류 교육 제8조 ① 매 학기 12~18학점을 수강신청하고 이수해야 한다.	제8조 ① 수정
제13조 교무처는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안내, 상담 및 자료 제공을 한다. 우수학생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에 관한 사항은 [별첨 1]을 참조할 것	제13조 국제교육원은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안내, 상담 및 자료 제공을 한다. 우수학생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에 관한 사항은 [별첨 1]에 따른다.	제13조 수정
제21장 전공의 결정 제1조 ① 생략 ② 학부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학부 내의 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한다.	제21장 전공의 결정 제1조 ① 생략 ② 학부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학부 내의 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한다. 단 자유전공학부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공과목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조 ② 내용 추가